의안번호	2201727
의 뢰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7.31.
추계번호	24E19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개정안) ①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2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30% ,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②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3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3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30%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

○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시에는 15%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시에는 30%의 세액공제,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은 15%의 세액공제를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

❑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기부 증가액, 기부대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650억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52.6만건

○ 총 기부 건수의 83.8%(44.1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어, 세액공제 한도 인상시 기부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